

영등포구의회  
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3. 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36 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 스마트메디컬(Smart-Medical)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 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특구의 대외적 표시 및 적용범위(안 제3조~제4조)

다. 특구의 규제특례 및 특화사업의 운영 규정

(안 제5조~제10조)

라. 특구협의회 설치·기능·구성 등에 대한 규정

(안 제11조~제18조)

마. 특구협의회 책임 및 의무, 특구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 
규정 (안 제19조~안 제2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

#### 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2017.12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,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특구의 대외적 표시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특례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서
- 안 제5조에서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
- 안 제6조에서는 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,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
- 안 제7조에는 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,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,
- 안 제8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는 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기간 동안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는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구협의회 설치 및 구성, 연 1회 정기회의 개최, 협의회의 책임 및 의무, 그밖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등을 명시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,

- 우리구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의료시설을 활용한,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특구는 뇌질환, 화상, 관절, 피부질환, 안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, 외국인 환자의 유치 및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본 조례제정으로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등,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 메디컬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특례적용으로 완화 받는 건축물이 이와 관련성이 없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, 문제점 발생 우려 등에 대한,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이며, 또한 기 협의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위해 후속조치인 조례개정과 더불어, 특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
**제12조(조례의 제정)** ① 특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(이하 "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-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.
-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**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(査證)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2조(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)**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(牛馬)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**

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(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·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**제30조(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)**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「의료법」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32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** ① 도시·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
2. 특구토지이용계획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

**제33조(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)**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, 이 경우 특구계획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.